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7,930,476	16,137,914
일반회계	466,334,251	13,990,028
특별회계	71,596,225	2,147,887
기타특별회계	71,596,225	2,147,887
동남권 핵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19,328,595	579,858
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	5,330,237	159,907
의료급여기금	502,659	15,080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890,498	26,715
폐기물처리시설	6,202,805	186,084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00,443	30,01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6,729,849	501,895
원자력발전지역개발	17,106,455	513,194
주차장	3,381,743	101,452
지하수관리	1,122,941	33,68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,211,25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